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August 7, 2018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OECD Super Tax Treaty Enters Into Forc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522\)](#)

#### OECD 다자간 협약 발효

2018년 7월 1일부터 9개 조세관할지역의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가 OECD에 기탁됨에 따라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이 발효되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맨섬(Isle of Man) 및 저지(Jersey) 등 총 9개 조세관할권이 처음으로 다자간협약을 위한 비준 작업을 통과시켰으며, OECD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해당 조세관할지역의 MLI가 발효했습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연계 방안 시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으로 알려진 본 협약은 조세조약을 당장 수정하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세관할지역의 조세조약 별로 상이한 조항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빠르면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자간 협약은 결과적으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기준에 맞게 1,200여개가 넘는 상호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ies)을 변경하게 됩니다. MLI를 통한 조세조약 업데이트 도입은 두 과세당국 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 대비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자간 협약:**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계획(tax planning)에 대응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되어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고, 전세계 조세 체계를 동시에 다양하게 협의 및 변경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 협약

## 영국

OECD에 따르면 영국은 6월 29일 MLI 관련 비준서를 OECD에 기탁 하였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서 영국의 다자간 협약 비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영국은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MLI를 통해 수정이 가능 할 수도 있는 121개의 조세조약 목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 체결된 조약을 의미합니다. 조세조약은 조세조약 상대방이 MLI에 서명하고, 이에 따른 비준서를 기탁하며, 해당 조세조약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기타 조세관할지역

기타 73개의 조세관할지역들도 다자간 협약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해당 조세관할지역들이 MLI 관련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LI 비준은 통상적으로 국내 입법 절차와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MLI 비준을 통과시키고 10월 1일 전까지 공식적으로 OECD에 비준서를 기탁한 과세관할지역들은 빠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MLI 조항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 Taiwan Issues Guidance to Solve Double Tax Issue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519)

### 대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가이드 발표

대만에서 발표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가이드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특히 다양한 과세관할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개혁 내용에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6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가이드가 6월 25일부터 유효하다고 발표했으며, 가이드 전문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만은 현재 32개의 이중과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조약마다 MAP를 통한 문제 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거주자 및 법인들은 조세조약에서 MAP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만 MAP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MAP과 관련된 가이드 발표를 통해 납세자가 국내 절차 이외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MAP 신청은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돼야 한다며 신청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해당 과세관할권의 과세당국들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해외관계사는 상호합의절차 신청 시 과세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대만과 해당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의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호합의 절차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이 국내법 상의 소멸시효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국내법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소멸시효로 인해 상호합의절차가 무효가 된다면 양 과세당국이 성공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도출하더라도 그 의미나 효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 **Canada Revenue Agency (CRA) Sets Record on Closed APA Cases**

#### **캐나다 국세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체결 건수 기록 갱신**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의 2017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은 2017년 동안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해당연도에 접수됐던 APA 신청

건수보다 더 많은 APA 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거의 유사한 수의 신청 건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APA 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절약
- 이전가격 관련 패널티 위험 제거
- 선제적인 이중과세 문제 해소
- 기존 과세연도로 APA 기간 소급적용 가능성
- 이전가격문서 구비 불필요

##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23건의 신청서(예비회담은 진행되었으나 APA 신청서 미제출 등)가 대기 중이며, 16 건이 신규로 신청되었고, 3건은 철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총 36건의 APA 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최근 7년(2017년을 포함) 중 가장 많은 체결 건수(2016년 26건 체결)입니다.

체결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쌍방 및 다자간 APA 의 체결 기간(신청부터 체결까지)은 기존 47.3개월 대비 48.5개월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또한, 하기에 명시된 추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진행중인 대부분의 APA 사례는 유형 자산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TNMM(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이 가장 많이 적용(진행중인 APA 건들의 약 70%)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입니다.
- 진행 중인 APA 건들 중 과반수 이상이 미국과 진행 중입니다.

[Australia Issues Guidance on Anti-Tax Avoidance Law for Global](#)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518\)](#)

## **호주 과세당국, 글로벌 다국적 조세회피법 (Multinational Anti-Tax Avoidance Law) 가이드 발표**

최근 7월 4일 호주 과세당국(Australian Tax Office)은 타 국가로의 사업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호주 국세청에 따르면 호주 소득세법 177DA 항에서 언급된 "직접적으로 관련된(directly in connection with)"이란 문구는 다국적 조세회피법(Multinational Anti-Tax Avoidance Law)의 핵심입니다.

외국 기업과 관련된 호주 현지법인이 호주 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회사를 통하여 호주 고객에게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국적 조세회피법을 적용할 수 있는 177DA 항의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관성' 테스트는 공급과 활동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접근 방법**

새로운 가이드 상에서 ATO가 채택한 접근법은 다국적 조세회피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법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잡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다국적 조세 회피법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한 활동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Five Countries' Tax Offices Join Forces to Fight Financial Crim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4 pg. 524\)\*\*](#)

### **5개국 과세당국, 금융 범죄와 맞서기 위해 협력 강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는 파나마 페이퍼즈(Panama Papers)와 같은 재무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빠른 역외 대응 차원에서 국제 집행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단체(글로벌 조세 동맹)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범죄자 속출 및 사이버 범죄의 사전 단속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공유 요청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RS에 따르면, 글로벌 조세 동맹은 역외 탈세 등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식, 데이터,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상화폐에 포커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마약 거래는 글로벌 조세 동맹의 주요 안건 중 하나입니다. 최근 조세관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세당국은 가상화폐 사용에 따른 위협과 가상화폐로부터 확보 가능한 잠재적인 세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영국 과세당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데이터 공유

과세당국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 및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글로벌 조세 동맹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보에 대한 민감도 및 보안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아직 세무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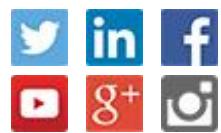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